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9월 3일, 김위상의원 등 11인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9월 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2024.11.21.)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3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4.12.3.) 상정·축조심사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5.2.19.) 상정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6.4.2.) 상정·축조심사·
의결(원안가결)

제43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4.7.)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김위상의원)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손을춘)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가받지 않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사업 폐쇄 관련 조치를 취하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2조 및 제33조¹⁾에 따라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에 관

1) 「행정기본법」 제32조(직접강제) ①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접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직접강제의 게고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33조(즉시강제) ① 즉시강제는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즉시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하며, 즉시강제의 이유와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집행책임자는 즉시강제를 하려는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한 원칙과 절차 등을 준수하게 하려는 것임.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조(폐쇄조치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을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사무소 또는 사무실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삭제 2. 해당 사업이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3. 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제19조(폐쇄조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없거나 현장에서 그 소재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강제를 실시한 후 집행책임자의 이름 및 그 이유와 내용을 고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절한 방법에 의한 공고로써 고지를 갈음할 수 있다.

1. 즉시강제를 실시한 후에도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국외에 거주하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고지할 수 없는 경우

경우에는 미리 해당 파견사업주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그 사업을 할 수 없게 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u>④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u>	<u>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다.</u>
--	---

2. 검토의견

현행법상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고,²⁾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근로자파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전허가를 받거나, 파견이 불가능한 업종 또는 쟁의 중인 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 등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영업정지 명령을 받거나 근로자파견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³⁾

고용노동부장관은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의 폐쇄를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①간판이나 영업표지물의 제거·삭제, ②해당 사업의 위법성을 공표하는 게시물의 부착, ③기구나 시설물에 대한 봉인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해당 조치는 필요최소한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해당 파견사업주에게 사전통지를 할 필요가 있으며,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함.⁴⁾

한편, 행정에 관한 일반법적 지위에서 제정된 「행정기본법」에서는

2.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제12조(허가의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파견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23. (생략)

4) 제19조(폐쇄조치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을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사무소 또는 사무실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삭제

2. 해당 사업이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3. 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파견사업주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그 사업을 할 수 없게 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행정청의 조치로서 ‘행정상 강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①직접강제는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을 말하고, ②즉시강제는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행정청이 미리 행정상 의무 이행을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성질상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행정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행정청이 곧바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목적의 달성을 하는 것임.⁵⁾

「행정기본법」은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의 실시 원칙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밝히고 있는데,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를 위해서는 다른 수단으로 그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보충성의 원칙), 즉시강제에 대하여는 최소한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집행 시 집행책임자의 증표를 보여주어야 하는 등 적법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5) 「행정기본법」 제30조(행정상 강제) ① 행정청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3. 직접강제: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
5. 즉시강제: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곧바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목적의 달성을 하는 것
가. 행정청이 미리 행정상 의무 이행을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나. 그 성질상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행정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 실시 원칙과 절차>

구분	직접강제	즉시강제
실시원칙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①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최소한으로만 실시
절차	①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 표를 보여야 함 ②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하면 직접강제를 할 것이라는 뜻을 문서로 계고함 ③ 의무불이행자에 대하여 직접 강제의 사유·시기를 문서로 명확하게 적어 의무자에게 통지	①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 표를 보여야 함. ② 즉시강제의 이유와 내용을 고 지하되, 즉시강제를 하려는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현장에서 그 소 재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강제를 실시한 후 집행책임자의 이름 및 그 이유와 내용을 고지

* 「행정기본법」 제32조(직접강제) 및 제33조(즉시강제)

개정안은 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자 등의 사업 폐쇄를 위한 간판 등
의 제거·삭제 등 위법한 근로자파견사업의 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직
접강제 또는 즉시강제에 관하여 행정작용의 기본법적 성격이 인정되
는 「행정기본법」상의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의 실시 원칙과 그 절차
에 관한 사항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것임.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이미 폐쇄 관련 조
치에 대한 사전통지, 필요최소한의 원칙, 관계 공무원의 증표 제시 등

해당 행정작용의 원칙 및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해당 규정에서 밝히고 있지 않는 행정작용의 원칙이나,⁶⁾ 마련하고 있지 않은 행정절차는 「행정기본법」이 보충하고 있다고 볼 것이므로,⁷⁾ 개정안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고용노동부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행정상 강제규정에 대해 「행정기본법」과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므로 수용한다는 의견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생략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6) 다른 수단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할 수 있다는 보충성의 원칙

7) 「행정기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부대의견

없 음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 자구심사내용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 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행정
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폐쇄조치 등) ① ~ ③ (생략) <u>④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u>	제19조(폐쇄조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다.</u>